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❍ 제정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.

❍ 주요 내용

가. 목적 및 기능 (안 제1조 ~ 안 제3조)

○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른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사항을 명시

○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

나. 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 (안 제4조)

○ 사무지원의 지원 근거를 규정

○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주군협의회의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사항을 명시

다. 인력 지원, 공공시설 이용 관련 사항 (안 제5조 ~ 안 제6조)

○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관련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명시

라. 포상 관련 사항 (안 제7조)

○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둠.

❍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제9조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제3조 및 제30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규제 사항 없음[기획감사실-3749(2019.04.18.)]

라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15659(2019.04.22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기간 : 2019. 4. 25. ~ 2019. 5. 15(20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성주군이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제3조(운영·사무처리 등) ① 대행기관장인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주군 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제4조(지원 및 준용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2호 및 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5조(인력 등 지원)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.
제7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「성주군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	관계법령

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제9조(사무기구)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(補)한다. <개정 2010. 5. 20.>

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
2.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
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제3조(대행기관 등)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.

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